

신용거래설명서 신.구조문 대비표

현행				개정(안)				비고		
Ⅱ. 상품개요 및 특성					Ⅱ. 상품개요 및 특성					증거금률별보 증금률변경
■ 신용거래제도 요약					■ 신용거래제도 요약					
구분			내용		구분			내용		증거금률별 담보유지비율 변경
신용거래 보증금률	용 자	일 반 형	계좌내의 현금으로 보증금 징수 증거금 30% 이하 ^{주1)} 종목 : 현금으로 45%의 보증금 징수(부담보평가금 징수불가) 증거금 40% 종목 : 현금으로 50%의 보증금 징수(부담보평가금 징수불가) 증거금 50% 종목 : 현금으로 60%의 보증금 징수(부담보평가금 징수불가) 증거금 60% 종목 : 현금으로 70%의 보증금 징수(부담보평가금 징수불가)		신용거래 보증금률	용 자	일 반 형	계좌내의 현금으로 보증금 징수 증거금 40% 이하 ^{주1)} 종목 : 현금으로 45%의 보증금 징수(부담보평가금 징수불가) 증거금 50% 종목 : 현금으로 50%의 보증금 징수(부담보평가금 징수불가) 증거금 60% 종목 : 현금으로 60%의 보증금 징수(부담보평가금 징수불가)		
		투 자 형	계좌내의 현금 및 주식으로 보증금 징수 증거금 30% 이하 종목 : 부담보평가금으로 45%의 보증금 징수(평가금부족시 현금징수) 증거금 40% 종목 : 부담보평가금으로 50%의 보증금 징수(평가금부족시 현금징수) 증거금 50% 종목 : 부담보평가금으로 60%의 보증금 징수(평가금부족시 현금징수) 증거금 60% 종목 : 부담보평가금으로 70%의 보증금 징수(평가금부족시 현금징수)				투 자 형	계좌내의 현금 및 주식으로 보증금 징수 증거금 40% 이하 종목 : 부담보평가금으로 45%의 보증금 징수(평가금부족시 현금징수) 증거금 50% 종목 : 부담보평가금으로 50%의 보증금 징수(평가금부족시 현금징수) 증거금 60% 종목 : 부담보평가금으로 60%의 보증금 징수(평가금부족시 현금징수)		
담보유지 비율	용자		증거금 30% 이하 종목 : 용자금의 140% 증거금 40% 종목 : 용자금의 150% 증거금 50% 종목 : 용자금의 160% 증거금 60% 종목 : 용자금의 170% (동일 계좌 내 2개 이상의 종목군이 있는 경우, 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은 가중평균하여 계산함.)		담보유지 비율	용자		증거금 40% 이하 종목 : 용자금의 140% 증거금 50% 종목 : 용자금의 150% 증거금 60% 종목 : 용자금의 160% (동일 계좌 내 2개 이상의 종목군이 있는 경우, 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은 가중평균하여 계산함.)		
^{주1)} 증거금 30% 이하는 20%, 30% 증거금률 종목을 의미합니다.				^{주1)} 증거금 40% 이하는 20%, 30%, 40% 증거금률 종목을 의미합니다.						